

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297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6. 11. 11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 공간확대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건립 중인 「중구청소년문화의집」이 개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위하여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설 “청소년문화의집” 반영(1개소 → 2개소) : (안 제2조)

| 개 정 전 | 개 정 후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
| 중구청소년문화의집(성남동) | 중구청소년문화의집(유곡동) | 신설 |
| | 성남청소년문화의집(성남동) | |

나. 상위법령과 일관성이 있도록 조문 정비(안 제3조 및 제6조)
- 위탁대상을 “청소년단체 등”을 “청소년 단체”로 변경

3. 근거법규

가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

나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 및 제16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따로 붙임”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나.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의견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6. 9. 12. ~ 2016. 10. 4.(의견 없었음)

마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가결

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(이하 “청소년문화의집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| 명 칭 | 위 치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구청소년문화의집 |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5길 15(유곡동) |
| 성남청소년문화의집 |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 |

제3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수탁자”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에 정한 청소년단체 등에”를 “「청소년 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 | | |
|---|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조(위치)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(이하 “청소년문화의 집”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에 둔다.</p> | <p>제2조(명칭 및 위치)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(이하 “청소년문화의집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구청소년문화의집</td> <td>울산광역시 중구 종가5길 15(유곡동)</td> </tr> <tr> <td>성남청소년문화의집</td> <td>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명 칭 | 위 치 | 중구청소년문화의집 |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5길 15(유곡동) | 성남청소년문화의집 |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 |
| 명 칭 | 위 치 | | | | | | |
| 중구청소년문화의집 |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5길 15(유곡동) | | | | | | |
| 성남청소년문화의집 |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78(성남동) | | | | | | |
| 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(생략)</p> <p>3. “수탁자”라 함은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을 말한다.</p> | 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수탁자”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.</p> | | | | | | |
|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</p> <p>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「청소년기본법」에 정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| 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| | | | | | |

<관련법령>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4.3.24.]

□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국가는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3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4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·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,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“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4.1.21.]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“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29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6. 11. 11.(금)
- 제출자 :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6. 11. 16.(수)
- 위원회심사 : 2016. 11. 22.(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창욱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 공간확대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건립 중인 「중구청소년문화의집」이 개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위하여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가. 신설 “청소년문화의집” 반영(1개소 → 2개소) : (안 제2조)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중구청소년문화의집(성남동) | 중구청소년문화의집(유곡동) | 신설 |
| | 성남청소년문화의집(성남동) | |

나. 상위법령과 일관성이 있도록 조문 정비(안 제3조 및 제6조)

- 위탁대상을 “청소년단체 등”을 “청소년 단체”로 변경

4. 근거법령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 및 제16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익희)

-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가선용 공간확대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건립 중인 「중구청소년문화의집」이 개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위하여 불부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